영양군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4호

2026년 제2회 영양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 제2회 영양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영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정 책 지원관	지방행정 주 사 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영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임기는 최초 2년이며,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 「영양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기본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2)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3)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나.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응시자격요건
정 책 지원관	지방행정 주 사 보 (일반임기제)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국회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포함), 법인 등에서 **법무(법제검토, 법률자문, 입법실무 등), 정책기획·연구·개발·분석, 예산·결산, 재무·회계, 지방행정, 지방자치(기획·연구 등), 감사·조사, 재정분석 관련 실무경력** **※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 경력을 인정하며, 인턴 및 사무보조·행정지원·연구보조·단순노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관련(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해야 함.

※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닌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예시: 주20시간 근무)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학위취득은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상에 기재된 졸업일자(학위수여일자)를 기준으로 함.

※ 학위취득 과정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4. 보수수준

가. 연봉액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라 **7급(상당)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70,782천원	**50,272천원**

나.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2)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합격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경력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26.11.2.(월) ~ 11.4.(수)	2026.11.11.(수) (예정)	2026.11.17.(화) (예정)	2026.11.18.(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영양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yyg.go.kr) 「공지사항」에 공고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종합격예정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이력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6. 11. 2.(월) ~ 11. 4.(수)

다. 접 수 처 : 영양군의회 의회사무과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1) 인터넷 접수 불가,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2)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 경상북도 영양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방문 접수 】

❖ 접수장소: 영양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팀 054-680-5041)

❖ 접수시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

❖ 응시수수료: 경상북도 영양군 수입증지 구입
(영양군청 1층 민원실에서 판매)

【 등기우편 접수 】

❖ 주 소: (우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인사담당자)

❖ 원서접수 마감일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임용분야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우편봉투 외부에 '영양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문구 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8. 제출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

※ 최종합격시에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함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영양군수입증지 7,000원(구입처 : 영양군청 민원실)

※ 영양군수입증지(정부수입인지 불가)를 미첨부한 응시원서는 무효처리되며,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동봉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⑦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해당자에 한함)

- 논문의 표지·목차·서론 사본 각 1부 포함

※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제출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행기관 직인 및 확인자 성명·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는 임용자격기준에 명시된 경력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직무내용을 정확히 기재(업무분장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 해당분야 임용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에 제출

⑩ 경력증빙자료 1부(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⑫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⑭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

나. 개별사항[별지 제11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경력, 학위 관련 증빙자료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력은 이력서에 기재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같은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계획대로 면접시험을 진행하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접수효력이 인정됩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영양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yyg.go.kr)「공지사항」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시험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영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채용담당자(☎ 054-680-5041)

참고1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1명

근무예정기관
영양군의회

주요업무	○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도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 관련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등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 기획력·팀워크 지향 ○ 전문지식, 논리적 사고, 창의력,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력
필요지식	○ 지방의회 기능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관련 지식 ○ 대내외 입법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연구 지식 ○ 정책 발굴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에 관한 지식 ○ 자치법규 제·개정절차 등 법제 업무에 대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정책지원관**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국회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포함), 법인 등에서 **법무(법제검토, 법률자문, 입법실무 등), 정책기획·연구·개발·분석, 예산·결산, 재무·회계, 지방행정, 지방자치(기획·연구 등), 감사·조사, 재정분석 관련 실무경력** **※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 경력을 인정하며, 인턴 및 사무보조·행정지원·연구보조·단순노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